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641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대전둔곡 A4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63호(2022.12.30.)로 승인 고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(둔곡) 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) 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2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사 업 명 :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(둔곡) 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, 통합공공임대)
- 사업시행자
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사업시행지역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, 둔곡동 일원
-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- 나. 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주택유형 변경)으로 계속적인 주택 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(주택유형 : 공공분양+통합공공임대 → 공공분양+분양전환공공임대)